

>> 2008년도 EPR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03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올해로 6년째 접어든다. 2008년부터 변하는 EPR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조합 운용과 관련하여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무생산자들이 자주 물어오는 궁금한 점들을 풀어본다.

1. EPR관련 주요 신고서 제출 기한 및 재활용부과금 고지·납부기한 변경

구 분	종 전	개 정	비 고
1.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1월 말	1월 말	종전과 동일
2. 07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3월 말	4월 15일	기업의 결산시기를 피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정
3. 07년도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보고서	3월 말	4월 30일	
4. 07년도 미이행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해당자만)	6월 15일	6월 30일	
5. 07년도 미이행 재활용부과금 납부(해당자만)	7월 5일	7월 20일	

- *1번은 당협회 회원인 경우, 협회가 제출
- *2번은 당협회 회원의 경우, 발포합성수지 재질을 구분하여 총량을 기재한 별지 제9호의 2 서식을 협회에는 4월 10일까지 제출

2.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 변경

업 종	종 전	개 정(08.1)	
	매출·수입액 기준	매출·수입액 기준	출고·수입량 기준
발포합성수지의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전과 동일)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발포합성수지 재질의 농·축·수산물 상자와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 제조업 및 수입업,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전과 동일)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되는 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수입액 및 출고·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 함.
- 단, 제조업과 수입업을 병행하는 경우 하나만 기준 이상이 되어도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됨
- *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의 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축·수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함
- * "연간매출액"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을 말함
- * "연간수입액"이란 수입항 도착가격(C.I.F)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3. 재활용 의무율 변경

품 목	2007년 의무율	2008년 의무율
발포합성수지	69.0%	74.8%